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 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실제 입주를 최초 입주가 능일로부터 3년 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되었음. 이에 따라 거주 의무를 유예한 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을 가입하고자 하나,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거주 의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 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범위) 영 제71조제1호마 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 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범위)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u>주택도시보증공사</u>